

『인권연구』 7(1): 97-13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1): 97-131.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4.7.1.97>

[일반논문]

여성에 대한 국가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치유 가능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 상 숙***

한글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 중 여성 피해생존자에 대한 국가폭력 양상을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피해생존자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했다. 피해생존자 중 일부는 전시에 군경에 의해 임신부 고문, 수용소 출산, 일가족 학살, 학살 현장 생존, 성고문 등의 피해를 겪었다. 전후에도 일부 피해생존자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경찰의 사찰 관리, 구타와 성폭력 등 연좌제 국가폭력을 겪었다. 여성들은 반공 사회의 배제와 가부장제의 성차별에 의해 강제 결혼을 하거나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제4·3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과거청산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유가족이 아닌 피해 당사자로서 겪었던 고통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보상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젠더폭력’의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첫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321)

** 이 논문은 필자가 2024년 5월 24일 5·18 44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과거청산과 여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 가능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관련 자료집 505-524쪽)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정리기본법 등에서 이를 진실규명 과제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진실 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 안에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피해생존자들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여성 단체와 인권 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주제어: 한국전쟁, 여성 피해생존자, ‘빨갱이 가족’, 국가에 의한 젠더폭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구술자들의 생애사 경험을 통해 본 국가폭력 피해
- III. 과거청산 활동이 구술자에게 미친 영향
- IV. 결론 : 국가의 젠더폭력 과거청산 가능성

I.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 중 여성 피해생존자에 대한 국가폭력 양상을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피해생존자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간 한국 사회의 과거청산은 성 인지적 관점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한 과거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이하 ‘진실화해법’ 등)에는 여성 피해자들이 전시와 전후에 겪은 국가에 의한 젠더폭력(이하 ‘과거사 젠더폭력’)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필자는 국가와 사회가 젠더적 관점에서 과거청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은 여성 피해자들의 구술 자료에 근거했다. 기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제주 4·3’ 포함) 여성 피해자들의 구술은 구술사 연구와 역사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뤄져 왔다. 구술사 연구와 역사학 연구는 주로 여성의 전쟁 체험을 기록하면서 문헌자료로 파악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의 복원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이며,¹⁾ 문학에서는 개인적 서사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접근해 온 것으로 보인다.²⁾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성폭력 피해를 다룬 연구는 소수이며, 주로 전시 성폭력과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³⁾

이 글에서는 여성 피해자들의 생애사 구술을 통해 전쟁 체험을 기록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전시·전후 국가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 유가족으로서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폭력과 가부장제의 폭력이 어떻게 결합하여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들이 겪은 피해와 트라우마는 사회역사적 측면에서의 치유가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국가 주도 진상규명 활동과 유족회 운동이 사회역사적 치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았다.

특히, 이 글에는 전시와 전후에 여성 생존자나 유족이 성폭력을 당한 사례를 일부 소개했다. 전시 성폭력 사례는 여러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와 다른 문헌 자료에도 소개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른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사례를 모아 정리했다.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겪은 여러 국가폭력 중 하나이며, 과거사 성폭력은 하나의 폭력만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증언을 꺼리므로 증언 수집이 어렵다. 이 글에서는 소수이나마 이러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젠더폭력 과거청산에 일조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2018년과 2021년에 조사한 여성 구술자 6명의

1) 윤택림(2003), 이입하(2004), 이입하(2010) 등.
 2) 김종균(2013), 박현숙(2014), 이성숙(2007) 등.
 3) 김성례(1998, 2001), 오금숙(1999), 김귀옥(2012a, 2012b, 2014, 2019 등), 김상숙(2021a, 2022) 등.

자료를 인용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면담자가 수집한 구술자 4명의 자료도 인용했다.⁴⁾ 이 10명을 성별로 보면, 9명은 여성이고 1명은 남성이다. 일부 구술자는 제주4·3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진술이 단편적으로 실려 있고, 지역 언론에 자신이 겪은 사건에 관해 인터뷰한 적 있다. 그러나 필자와 생애사 면담을 할 때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므로 구술자의 이름은 전부 다 비실명으로 했으며, 사건 발생 지역도 제주, 중부, 남부 등 광역 단위로만 표시했다. 구술 자료를 인용할 때 사투리는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일부만 남기고 대부분 표준말로 바꾸는 형태로 인용했다. 구술자의 주요 이력은 참고문헌 목록 끝에 첨부했다.

또한, 본문의 상당 부분을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했으므로, 직접 인용문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에는 직접 인용한 단락에만 구술 자료 출처를 표기했고, 직접 인용문을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단락은 단락의 맨 끝에 구술 자료 출처를 표기했다.

II. 구술자들의 생애사 경험을 통해 본 국가폭력 피해

이 글에 소개된 여성들은 아버지, 남편, 오빠 등 남성 가족 구성원이 전쟁 전 사회운동에 참여했거나 전시에 학살되면서 자신도 국가폭력 피해를 겪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 형성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분단정부 반대 운동을 진압하는 데 전근대의 형벌인 연좌제가 활용됐다. 이때 여성에 대한 연좌제 폭력은 여성 당사자가 겪는 피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그 여성을 소유한 남성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또는 남성 행위자 일족의 재생산 통제를

4) 전체 구술자 10명 중 6명은 2010년과 2021년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자료를 수집했다.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들도 구술 자료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증언은 모두 비실명 처리해 인용했다.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아카이브 서지사항도 본문에는 밝히지 않고 참고문헌 목록에 표로 제시했다.

위해 자행됐다. 즉,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남성이 겪을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행됐다(김상숙, 2022: 100). 일부 구술자는 전후에도 ① 국가에 의한 연좌제 폭력, ② 반공 사회의 배제와 결합한 가부장제의 폭력을 겪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1. 전시의 국가폭력

구술자 중 5명은 전시 국가폭력 생존자이다. 그들은 한국전쟁 전후에 성고문, 임신부 고문, 아동 고문, 수용소 출산, 일가 몰살 등의 피해를 겪었다.

제주지역 구술자 문○○(1930)은 1947년에 결혼했으며 제주4·3항쟁 후 1948년 5월 1일에 ‘오라리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을 주민으로서 피해를 겪었다. 1948년 가을에는 마을에 들어온 군경 토벌대가 임신부인 구술자에게 남편의 행방을 대라며 배 위에 나무토막을 놓고 널을 뛰는 고문을 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토벌대에게 끌려 나와 연미동네 회관[*현 제주시 오라이동 연미문화마을회관] 마당에 가 보니 마을 어른들이 다 끌려 와 있었어. 토벌대가 할머니들을 엎드리게 하고 할머니 등 위에 할아버지가 말 타듯이 올라타게 해서 마당을 뱅뱅 돌게 하더라고. 토벌대는 나를 마당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긴 나무토막을 임신한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양쪽에 올라서서 널뛰기하면서 밟았어. “네 서방 간 곳을 대라”면서. 나는 곧 죽을 거 같아 “모릅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어. 그들은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어떻게겐 말 안 해도 각시에겐 말한다. 서방이 폭도질하러 가지 않았느냐?”라면서 고문했어.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이 아인 모릅니다. 놔 줘서. 차라리 내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달려드니 시어머니 뺨을 때리면서 그 짓을 계속했어(문○○ 구술, 2021.4.25.).

구술자는 1948년 늦가을에 토벌대가 마을에 불을 지르자, 가족들과 한라산으로 피란(避亂)했다. 한라산에서 겨울을 보낸 일가족은 군경의 선무공작에 의해 1949년 3월에 하산해 제주시 건입동 동양척식주식회사 창고에 수용됐다. 당시 만삭이던 구술자는 1949년 6월에 수용소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출산 후 수용소에서 석방됐다.

그해 겨울은 눈도 오고 무척 추웠어. 뺏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었어. 그래도 경찰이 쫓아오니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업고, 나는 어린 시누이 손을 잡고 하룻밤 1리도 더 되는 길을 도망갔지. 가는 길에 나무 밑이나 억새밭에 숨기도 하고, 냇가 돌 위에서 눈을 붙이기도 했어. 먹을 것이 없어 며칠씩 굶었지만, 토벌대가 무서워 배고픔도 못 느꼈어. 당시 우린 다 죽을 거로 생각했어. 나는 점점 배가 불러 만삭이 됐지만, 몸이 무거워 못 견디겠다는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목숨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만 났어. …… 난 동척회사에서 아들을 낳았어. 그날은 새벽 첫잠에 폭 빠졌다가 깨어 저 아들을 낳은 것 같아. 내가 산통으로 아파하니까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몸뻐 바지를 벗어 아기를 받았지(문○○ 구술, 2021.4.25.).

한라산 피란지에서 가족과 헤어졌던 구술자의 남편은 군경에게 체포되어 1949년 6월 군법회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10월 제주공항 인근 바닷가에서 총살당했다. 시숙부는 군법회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7월에 학살됐다. 시모는 1949년 7월에 수용소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나중에 풀려났다. 당시 4살, 7살 정도의 아들이었던 시동생 2명도 가족이 수감되면서 제대로 돌봐 주지 못해 사망했다.

중부지역 구술자 최○○(1923)는 1941년에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다. 구술자의 가족 중에는 시동생 등이 한국전쟁 전에 사회운동을 했으며 인민군 점령기에 마을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50년 9·28

후 전세가 바뀐 뒤에 구술자의 남편과 시부모, 아들 2명(2살, 4살), 남편 형제와 친척 등 일가 수십 명이 마을 치안대에게 부역 혐의자라는 이유로 학살됐다.

애들은 음력 8월 추석 지나고 그렇게 됐죠. 아가들이 돌 지나고 재롱부리며 걸어 땡기고 그랬지유. 명절 때, 내가 하얀 모시에 도라지로 분홍 물들여 조그만 바지저고리 만들어 입히고 이쁘게, 이쁘게 해준다고 했는데……. 난리 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다가 끌려갔어요. 그렇게 끌려가 죽었으게……. 말하면 뭐 해요. 그때 젓이 여기다 맷짜구[맷돌] 달아 놓은 것 같았어요. 무거워서. 젓이 붙어서 또 흐르고 그러니까. 아이유, 정신없어요(최○○ 구술, 2021.4.18.).

남부지역 구술자 박○○(1936)은 막내 오빠가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의용군으로 입대한 적이 있었다. 그 뒤 1951년 1월에 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토벌 작전을 펼치자, 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폐광 굴로 들어가 은신했다. 구술자의 가족도 굴로 들어갔는데, 당시 굴 안에는 피란민 수백 명이 있었다. 1951년 3월, 군경 토벌대는 굴속에 있는 피란민들을 토벌하기 위해 굴 입구에서 3일 동안 불을 피웠고, 이에 수백 명이 질식사했다. 구술자의 어머니, 셋째 오빠, 임신부였던 올케도 굴속에서 사망했다.

연기가 엔간히 빠진게로 군인들이 굴속에 들어와 나가장게 따라 나왔지. 그때 엄마가 입구에 쓰러져 계시기에 엄마 가슴에 손을 딱 댔더니 가슴이 따듯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한이 맺히지요……. 나올 때 봉게로, 산에 산판에서 나무를 베면 착착착 쟁여 놓잖아? 그것처럼 굴 입구에 시신들이 착착착 누웠더라고. 그때는 군인들 손에 끌려 나오게 그걸 봐도 무서운 마음도 없고 아무 정도 모르고 나왔어(박○○ 구술, 2021.6.16.).

현장에서 생존한 구술자는 국군의 손에 끌려 나와 경찰지서에 수감됐으나, 지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다. 함께 지서에 수감됐던 다른 생존자들은 모두 총살됐다.

한편, 중부지역 구술자 신○○(1936)은 아동과 유아에 대한 경찰의 고문 사례를 구술했다. 구술자는 오빠가 1949년 가을에 연행되어 형무소에 수감됐다. 그 뒤 구술자 가족은 지서 경찰에게 따로따로 연행되어 오빠의 과거 행적에 관해 취조받았다. 경찰은 구술자가 당시 13살의 국민학생이었는데도 연행해 목에 총을 겨누며 협박했다.

하루는 밤에 경찰 세 명이 권총과 장총을 들고 저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오빠 행방을 물었어요. 제가 모른다니까 경찰들이 제 목에 총을 겨누며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그렇게 당했어요. 제가 계속 모른다고 했더니 나중에는 집으로 가라고 풀어 줬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데, 그때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날 수 없어 기어서 도망 왔어요. 우리 집 방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신○○ 구술, 2010.3.31.).

더구나 경찰은 구술자의 집에 와서 5살 조카딸(오빠의 딸)도 경찰서로 데려갔다. 조카딸이 경찰에게 업혀 간 뒤 구술자와 가족들은 경찰서까지 따라갔다. 구술자는 “경찰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들으니, 경찰이 애를 혼냈다, 달랬다 했고, 애도 울었다, 그쳤다 했어요. 그러면서 오빠에 관해 취조했나 봐요.”라고 했다. 경찰은 5살 유아를 한동안 취조하더니 데려가라고 풀어 주었다. 당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협박당했고 집 밖에 밤낮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구술자의 가족은 이런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한 마디 말도 못했다. 전쟁이 나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구술자의 오빠가 학살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구술자의 가족은 그렇게 생활해야만 했다.

중부지역의 또 다른 구술자 강○○(당시 20대)은 임신부로서 1950년 10월에 남편이 월북한 뒤 경찰에게 권총으로 위협당하는 등 감시

를 당하다가 지서로 끌려가 20일 동안 간헐했다. 그때 경찰은 구술자에게 매질하며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코와 입에 붓는 고문을 했다. 구술자는 출산이 임박했을 때 풀려났다가, 출산 후 1951년 1·4후퇴 무렵 먼 향토방위특공대원에게 다시 끌려갔다. 아기와 함께 끌려간 구술자는 면사무소 창고에 40일 동안 구금된 채 산모임에도 성기에 ‘인두질’을 하는 고문을 당했으며, 고문이 심해 성기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구술자가 취조받으러 갈 동안 아기는 돌봐주는 사람 없이 창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굶주린 상태에서 얼어 죽었다. 그 뒤 석방된 구술자는 미쳐서 발가벗고 뒷산으로 뛰어다녔으며, 죽으려고 새끼줄을 들고 목을 매달려고 했다. 구술자는 그 고통을 겪고 겨우 생존했으나, 전후에도 시어머니가 항상 “□□가 빠진 □□년” 등 성적 모욕을 담은 욕을 하며 구박했다(강○○ 구술, 2004.9.3.).

한국전쟁 시기 여성 학살과 전시 성폭력은 ① 전과(戰果) 보충, ② 교전 후 보복, ③ 보급기지 차단과 ‘잠재적 적성 분자’에 대한 예방학살, ④ 집권 세력이 적으로 간주한 남성의 가족 재생산 방지, ⑤ 군인의 전투 스트레스 해소 및 전쟁 보수 대체 지급, ⑥ 점령 의례 실현 등을 목적으로 나타났다(김상숙, 2022: 100). 특히, 인민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수복 후 부역 혐의자 가족에 대한 국가폭력은 보복의 대중화, 정치화 기조 속에 민간인이 대대적 동원되어 가해 단위가 확장된 상태에서 자행됐다(김학재, 2010: 110). 이때 부역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가족, 일가 전체가 피해 단위가 되었으며, 부역 혐의자로 간주된 남성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그 가족 구성원인 여성에게 구금시설 성고문과 공개 장소에서의 성적 모욕 행위 등의 성폭력이 자행됐다(김상숙, 2022: 113). 강○○의 구술 사례는 이러한 전시 성폭력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

2. 전후 국가에 의한 연좌제 폭력

구술자 중 일부는 전후에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 국가는 민간인 학

살 희생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폭력을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전국 경찰서에서는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등의 문서에 ‘처형자명부’, ‘월북자명부’, ‘행불자명부’, ‘요시찰인명부’ 등을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이 명부에 가족 3~6명의 신상정보를 함께 기록해 관리했다. 그리고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가 1980년 9월에 전국 경찰서의 기록을 정비하기 위해 하달한 『신원기록일제정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6.25 전후 혼란기에 작성된 각종 사상관계 기록은 정확성이 결여된 점이 있고 …… 현재 본인 및 가족의 사상과 충성심을 반영해 …… 현재를 기준으로 해 심사……”(내무부 치안국, 1980; 진실화해위원회, 2008: 621, 624).

이 문서를 보면 ① 전후에 경찰이 이른바 ‘처형자’, ‘월북자’, ‘행불자’ 가족의 감시를 위해 사상 관계 기록(신원 관련 문서)을 작성해왔으며, ② 이 기록들은 한국전쟁 때 학살되거나 실종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료 작성 시점의 생존자와 가족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심사 기준표를 작성하고 한국전쟁 때 학살한 ‘처형자’, ‘월북자’, ‘행불자’를 갑·을·병으로 분류해 그 가족을 관리했다.

그런데 구술자들의 구술을 살펴보면, 민간인 학살 유가족 중에도 전쟁 전부터 활동했던 유명한 사회운동가의 가족이나 월북자 가족에 대한 사찰 관리 강도가 더 높았다. 이들은 가족 전체가 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동향 감시, 거주지 제한, 불법 연행과 구금, 금품 갈취와 협박 등을 당하며 일상생활 공간이 사실상 감옥이 된 상태에서 생활했다. 특히, 요시찰 대상이 된 여성들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폭행 위협을 받기도 했다.

구술자 중 남부지역 구술자 정○○(1946)은 집안의 남성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전쟁 전 사회운동을 했으며, 아버지는 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에서 학살됐다. 구술자의 가족은 집안 전체가 전후에 공안당

국으로부터 국가폭력을 당했다. 가족 중 남성들은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되어 취업이 불가능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가족 중 여성들도 담당 형사에게 국가폭력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우리 집 마당에는 늘 형사들이 득실거렸어요. 형사들은 담당이 바뀔 때마다 우리 집을 인수인계해 주고 가는 것 같았어요. 항상 짝을 지어 와서 마당 살평상에 드러누워 엄마보고 국수 내놓아라, 뭐 내놓아라, 시키면 엄마는 암말도 못 하고 국수를 말아서 해주고. 엄마는 밤에는 항상 가마솥 밑의 검정을 꺼내 얼굴에 바르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호출받아 가는 날에는 헤진 삼베 치마를 입고 머리는 산발하고 얼굴에는 솟검정을 묻히고 희한한 모습으로 가곤 했어요. 경찰서에 갔다가 돌아올 때 정신을 잃고 휘적휘적 걸어오면 마을 어귀에서 애들이 돌도 던지고 그랬어요. 미친 여자라고……(정○○ 구술, 2021.4.19.).

구술자 본인도 담당 정보 형사에게 감시당했고 구타, 성추행을 당했다. 구술자는 20대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서독으로 가고자 했으나 여권이 나오지 않아 포기하기도 했다.

제가 20대에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도 경찰들이 끈질기게 미행하고 감시했어요. 또, 그 무렵 간호사를 서독으로 많이 파견하던 때라 제 동료들은 서독으로 갔는데 저만 여권이 나오지 않아 못 가게 됐어요. …… 한 번은 제가 경찰 지프 차에 실려 갔어요. 가면서 형사들이 “네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했어요. 가는 길에 ‘아, 내가 이놈한테 당하겠구나.’는 생각이 들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때 머리를 다쳐서 머리가 축구공처럼 부었지만, 어디에도 고발을 못 했어요. 저는 1980년도까지 형사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말 안 듣는다고 따귀를 많이 때렸어요. 머리를 주먹으로 칠 때는 정말 눈앞에서 불이 번쩍번쩍할 정도로 맞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요. 형사가 입을 맞추겠다고 제 입에 혀

를 밀어 넣었을 때, 제가 그걸 깨물어서 피가 입안에 고인 적도 있어요. 그 피 냄새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누구하고 입 맞춘 적이 없어요(정○○ 구술, 2021.4.19.).

구술자의 고모도 경찰서에 끌려가 거꾸로 매달려 구타를 당하는 고문을 당한 적이 있으며, 일가족이 경찰의 사찰 관리를 당하는 바람에 구술자의 고종사촌 언니가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중부지역 구술자 주○○(1949)도 자신이 겪은 연좌제 폭력에 관해 구술했다. 주○○의 집안에는 아버지와 삼촌이 전쟁 전에 사회운동을 했다. 구술자의 삼촌은 1950년 9·28 후 월북했고, 구술자의 아버지는 삼촌의 피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1951년 초에 체포되어 형무소에서 학살됐다. 주○○의 가족은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되어 경찰의 사찰 관리가 더 심했다. 구술자의 조모는 큰아들이 체포될 때 경찰관에게 구타당해 장애인이 된 뒤 그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았고, 조부도 큰아들이 학살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후에 경찰과 우익단체원이 횡포를 부리니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경찰이 와서 할아버지께 별 소리를 다 물어봐요. 아버지 소식 오느냐, 북으로 간 삼촌이 왔다 가지는 않았느냐. 마을 사람 중에 우익청년단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잡아갔고, 할아버지도 그 사람들에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열한 살 먹던 해부터 할아버지 정신이 이상해져서 식구들이 얼씬만 하면 “저놈들이 우리 애기 죽이러 온다!”고 하며 쇠스랑이고 낫이고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눈에 저 말고 다른 식구들은 다 아버지 잡아간 우익단체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주○○ 구술, 2021.5.19.).

구술자는 조부가 정신이상인 뒤 병시중을 드느라 국민학교 4학년 때 학업을 포기했다. 그런데 경찰과 우익단체원은 10대 초반의 아동인 구술자도 사찰하며 감시했고 성폭행 위협도 가했다. 또한 경찰

서에서는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술자의 집으로 출두 명령서를 보냈고, 그때마다 10대 초반인 구술자가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다.

경찰서에서 며칠날 몇 시까지 오라고 엽서가 와요. 그러면 조부모님 둘 다 편찮으시니, 제가 우리 집에서 16km 떨어진 경찰서까지 걸어서 갔다가 밤중에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밤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쌀 같은 것 가지고 어디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물으면서 저를 항상 따라다녔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열네 살 때부터는 마을 우익 사람들이 괴롭혀서 혼자 집에서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빈 집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잤다니까요(주○ ○ 구술, 2021.5.19.).

구술자는 결혼 후에도 경찰의 사찰 감시를 당했다. 구술자의 남편도 일본에 취업할 기회가 있었으나, 연좌제 때문에 여권이 나오지 않아 출국을 포기했으며, 막내삼촌도 연좌제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마흔여섯 살에 자살했다.

이외에도 구술자 중 일부는 경찰에 의해 장기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중부지역 남성 구술자 김○○(1933)은 아버지가 전쟁 전에 사회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시에 가족이 학살됐다. 구술자는 타지로 도망가 살다가 이○○와 결혼했다. 그런데 1953년에 당국에 신원이 발각된 뒤부터 수시로 여러 공안기관에 끌려가 고문당했다. 수사관들은 구술자를 연행한 뒤에는 가택 수색을 해 돈과 귀중품을 가져가고 아내에게 네 남편은 간첩이라고 하면서 밥이나 술을 달라고 한 뒤 성폭행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아 몸이 쇠약해져 병을 앓게 됐다. 수사관들은 1973년 어느 날도 남편을 대공분실 안가로 끌고 간 뒤 아내를 성폭행했으며,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내는 결국 실신했다. 아내가 쓰러지자 그들은 구술자가 있는 대공분실 안가로 연락해 구술자를 풀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구술자가 집안에 널

브러져 있던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가려고 문을 나설 때, 아내가 숨을 거두었다(김○○ 구술, 2010.4.10.).

남부지역의 여성 구술자 한○○(1944)은 아버지가 전쟁 전에 사회운동을 하다가 실종됐다는 이유로 요시찰 대상이 됐다. 정보과 형사들은 구술자가 어릴 때부터 수시로 가족을 사찰 관리를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구술자의 어머니를 성폭행했다. 구술자는 어머니가 성폭행당하며 이를 가는 소리를 옆방에 숨어서 들어야 했다. 구술자가 성인이 되자, 형사들은 구술자에게 네 아버지는 간첩이라고 하며 수시로 끌고 가 구타하고 성폭행 대상으로 삼았다. 구술자는 1970년대 말 어느 날에는 경찰이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해 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여성이 잡혀 와 있는 것을 봤으며, 형사들은 그들을 경찰서 근처 여관으로 데리고 가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탈출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한○○는 ‘실종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국가기관원들에게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한○○ 구술, 2018.10.19.).

위의 두 구술은 공안기관원들이 특정 여성들을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던 사례를 보여준다. 구술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폭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 직후부터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1980년대 초반까지 수십 년에 걸쳐 조직적인 형태로 자행됐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분단반공 체제 구축을 위한 점령의례의 의미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군경이 토벌작전 지역 등 일정한 영토를 점령한 뒤, 점령지역 안의 여성에 대한 집단성폭력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확인하고자 했던 경우가 있다. 이때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점령지의 복속을 확인하는 상징적 도구가 되었고, 점령의례 실현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위의 구술 사례를 보면, 점령의례 실현이라는 전시 성폭력의 특성은 전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반공 가부장제 국가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특정 인구집단을 구분하고 그 집단의 여성을 유린함으로써, 과거 반공체제에 저항한 것으로 간주되는 남성의 복속과 분단반공 체제의 승리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 여성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성고문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결코 피해자의 탓이 아님에도 지금도 2차 가해의 우려로 공개적으로 증언조차 할 수 없는, 분단반공 체제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타자가 됐다.

3. 반공 사회의 배제와 가부장제의 폭력

1951년 3월 폐광 굴의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남부지역 구술자 박○○은 사건 2년 뒤 1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이웃 마을 청년방위대원과 혼인했다. 1950년 10월에 부역 혐의 학살 사건으로 일가가 몰살된 중부지역 구술자 최○○도 학살 사건 직후 친정으로 피신했다가 얼마 뒤에 인근 마을 주민과 재혼했다. 이처럼 일부 구술자들은 혼인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를 당했던 원 가족과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고 새로이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 구술자 문○○은 재혼하지 않고 여성 가장으로서 생계담당자가 되어 아들을 부양했다. 구술자가 1949년 여름에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원래 살던 마을은 토벌대가 불을 질러 완전히 소각됐으므로, 구술자는 아들을 데리고 이웃 마을 친척 집으로 갔다. 그 마을에도 소각되지 않고 남은 집은 몇 채 남지 않았기에, 그 집에는 피란민 수십 명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 구술자의 가족은 그 집 마루를 겨우 빌릴 수 있었고, 이후 7년간 그곳에서 다른 피란민들과 주거공동체를 이룬 채 생활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외지에서 온 군경 토벌대에 의해 토박이 주민들이 공동체 단위로 피해를 겪었으므로 피해 유가족을 배제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고 연대해 전쟁의 피해를 복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구술자들은 전후 반공 사회에서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사실상 사회적 하층민으로서 친척과 지역 주민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사회적 배제를 겪었다. 중부지역이나 호남지역에는 전시에 인민군이 점령하면서 인민군과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9·28 후에는 반대로 군경과 지방 우익에 의한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많다. 이런 지역에는 전후에도 전시의 갈등과 권력관계가 이어져, 부역 혐의 학살 사건 유가족들은 전시의 가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당했다.

중부지역 구술자 주○○의 어머니는 남편이 학살된 3년 뒤 시부모에게 쫓겨나, 결국 비자발적으로 재혼했다. 구술자는 그 뒤 조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자 열한 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 그런데 친척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구술자를 멀리했으며, 이웃들도 자기 아이들에게 구술자가 빨갱이 딸이니 같이 놀지 말라고 시켰다. 극심한 소외로 방황하던 구술자는 18살에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한 뒤 강제 결혼했다. 구술자는 결혼한 뒤에도 ‘빨갱이 딸’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시모로부터 일상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

열여덟 살이 되자 고모들은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재산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저를 강제로 시집보낼 궁리를 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죽으려고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 위세 척했는지 목숨은 겨우 살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혼미한 상태로 고모들이 절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이 집에 보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 보니 모든 것은 끝이 났고, 저는 애가 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남편의 폭행은 일상적으로 있었죠. 저더러 빨갱이 딸이라면서 폭행했죠. 저는 그저 머리끄덩이 잡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빨갱이 딸이라고 이웃에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저를 미친 여자로 알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 저 여자 아버지가 빨갱이 두목이라 그렇게 당하고 산다고 말했어요(주○○ 구술, 2021.5.19.).

구술자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또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러다가 결국 스물여덟 살에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했다. 구술자는 그 뒤 가장으로서 상업을 종사하며 평생 생계와 육아를 책임졌다. 이처럼 구술자는 전후에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집

안사람들과 계속 같은 마을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사회적 배제를 겪으면서 가정폭력까지 당했다.

한편, 연좌제 폭력을 겪었던 남부지역 구술자 정○○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 구술자가 살던 마을에는 경찰과 동장이 구술자의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구술자 가족은 ‘빨갱이 집안’이라고 낙인이 찍혔다. 구술자의 가족은 버스라도 타려면 마을 앞길 이 아닌 뒷길로 나와야 했으며, 집안 행사 때 친척들이 어머니를 조리돌림 하는 일도 있었다. 구술자는 20대 후반에 연좌제가 사유가 되어 파혼한 뒤에는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으로 살았다.

병원에 근무할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권이 나오지 않으니 결국 딸 여자와 결혼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뒤 저는 쪽 혼자 살았죠. 30대, 40대에 중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반대했어요. 집안이 이 모양이라 제가 시집가도 쫓겨 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 안 하고 사니까 주위에서는 속사정도 모르고 눈이 높아서 시집을 못 간다고 했죠.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내 처지를 누가 알겠나?’ 그런 생각도 했고, ‘결혼해서 편안히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한 편으로는 ‘내가 시집을 가?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도 생각했죠(정○○ 구술, 2021.4.19.).

이외에 강제 결혼 피해를 증언한 구술자도 있다. 중부지역 구술자 여○○(1931)는 아버지와 오빠 등 가족과 친척 9명이 여운형의 일가라는 이유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게 학살됐다. 그 뒤 구술자 가족은 마을에서 쫓겨났으며, 구술자의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 학살의 충격과 생활고로 사건 1년 후 남의 집 헛간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구술자는 강제로 우익청년단 간부의 첩이 됐다. 강제 결혼을 한 구술자는 그 집에서 농사노동과 가사노동을 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 약 10년간 첩살이를 하던 구술자는 아들을 낳은 뒤 남편이 사망하자,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 날뎠팔이와 바느질을 하며 살았다. 남편

은 구술자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아들 호적도 본처 앞으로 올렸다. 구술자는 호적상 처녀였으며, 아들도 호적상 자기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평생 가장 큰 한이라고 하였다.

앞의 절에 서술한 요시찰 대상에 대한 성폭력이 국가기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 자행된 폭력인 것에 비해, 강제 결혼은 결혼이라는 제도화된 형식을 취하며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빨갱이 가족’ 여성은 반공 사회에서 신분적 하층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배제됐고 가족 안에서 위계적 관계에 의해 노동 통제와 재생산 통제를 당했다. 이것은 가정폭력으로도 나타났으며, 혼인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4. 트라우마와 심신의 후유증

구술자들은 국가폭력을 당하면서 심신의 후유증을 겪었다. 더구나 구술자들이 겪은 국가폭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누적된 것이므로 후유증이 심각했다.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심리적 건강에 관한 전남대학교 심리건강연구소의 연구(2007), 김문두의 연구(2011), 이영문의 연구(201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센터의 연구(2016) 등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민간인 학살 생존자의 40%가량, 유가족의 20%가량을 중증 치유 대상자로 볼 수 있다.⁵⁾ 필자가 만난 구술자들도 다양한 트라우마 증상을 표현했

5) ① 전남대학교 심리건강연구소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조사 : 설문에 응한 406명(당사자 18명, 가족 344명, 기타 44명) 중 당사자의 38.9%, 가족의 19.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전남대학교 심리건강연구소, 2007). ② 김문두의 4·3후유 장애자(생존부상자) 조사 : 설문에 응한 70명 중 68.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었고 중증 증상의 유병률을 보인 경우는 34.3%였으며, 53.3%가 우울 증상을 보였다(김문두, 2011). ③ 이영문의 여순사건 피해자 조사 : 설문에 응한 150명 중 3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었고, 32.8%가 우울 증상을 보였다.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17.9%에 달했다(이영문, 2013:

으며, 이것이 신체 질환으로 전이된 경우도 있었다. 국가폭력 피해가 성장기에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일가가 몰살된 뒤 인근 마을 주민과 재혼했던 구술자 최○○는 읍내에서 오일장이 열려 가해자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면 트라우마를 경험했기에 장 보러 가는 일이 힘들었다고 했다. 구술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전시에 있었던 사건을 어제 일어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고 젓먹이 자녀가 학살당한 트라우마를 안은 채 살고 있었다.

아이고. 그 시절 얘기하게 하기 어려워요. 식구 다 뺏기고 새끼 뺏기고 나는 친정서 데려갔지. (친정에 있는 동안) 우리 암소가 새끼 낳아서 (친정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장에 팔았는데, 어미 소가 밤새 울더라고. “엉엉, 엉엉”하며 눈물 흘리가며 울더라고. 나도 같이 울었시유. 소코뚜레 잡고. “네가 내 신세 보다 낫구나. 나는 소만도 못 한 년이다. 새끼 뺏기고도 사는 나는 너보다 독한 년이다.”고. 그러면서 같이 울었다고. …… 상처는 많쥬. 아이구, 말하면 뭐 해요. 산 새끼들 뺏기고 내가 산 생각하면 눈물 모대면 몇 동이인데. 지난 생각하면 아실아실 해여. 어떻게 살았나 싶고. 내 생각에도 내가 독한 년이여. 산 새끼 뺏기고도 사니 독한 년이다, 내가 나보고 그랬지(최○○ 구술, 2021.4.18.).

제주지역 구술자 문○○도 사건의 트라우마를 표현했다. 구술자는 시모가 평생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죄는 증상을 겪었고 보리밭에 일하면서 홀로 우는 등 마음의 병을 앓았다고 했다. 그 점은 구

167~215). ④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센터가 4·3생존희생자 110명과 유가족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 응답자 중 생존희생자 39.1%와 유가족 11.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이었고, 생존희생자의 41.8%와 유가족 20.4%가 중등도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생존희생자의 45.5%와 유가족의 70.3%가 자살 경향성을 보였다(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센터, 2016: 10).

술자도 마찬가지였다. 구술자의 아들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4·3에 관해 물어보면 “모르켜.”라고 하면서 당시 겪었던 일을 말하길 꺼렸다고 했으며, “혼자 사는 어머니가 마음에 병은 있는데, 자식에게 얘기도 못 하니 늘 수심에 차 있고, 자식도 그 얼굴만 보고 자라니 웃을 줄을 모른다.”라고도 했다.

전시에 폐광 굴에서 살아남은 남부지역 구술자 박○○는 평생 호흡기 만성 질환을 앓았고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사건 현장 생존자로서의 트라우마도 있었다.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고 그려. 항상 잊어버리
들 못하고 마음속에 맴혀요. 어쩔 때면 어디 가서 하루 내 울
어도 한이 안 풀리겠어. 그저 남이 웃으면 따라서 웃고 남이
이야기하면 같이 하지만, 아무 취미가 없어요. 사건 나고 몇
년 동안은 꿈에 그 장면이 나타나고 엄마가 안 보이는 날이 없
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하도 꿈에 보잉게, 안 봤으면 싶더랑게.
그런데 몇 년 지나고 하루는 꿈을 꾸는데 엄마가 뽀얀 옷을 입
고 나타나 이제는 내려놓고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길로 좋은 데로 가셨는지, 이날 생전 엄마가 꿈에도 안 보
여요. 이젠 엄마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느디……. 엄마가 보
고 싶어요. 우리 엄마 다시 만나서 같이 한 번 살아봤으면……
(박○○ 구술, 2021.6.16.).

한편, 구술자 주○○과 정○○는 ‘빨갱이 딸’이라는 이유로 연좌제 폭력, 가정폭력, 친척과 이웃의 따돌림, 빈곤의 고통, 아버지 또는 부모 부재의 고통을 겪었으므로 평생 각종 심신의 질환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했다.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주○○는 ‘빨갱이 딸’이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왔기에 늘 외로웠고 무엇이든 혼자 처리하는 성격이 형성됐다고 했다. 구술자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앞의 절에서 서술했듯이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항상 외톨이였죠. 저는 산에 가서 혼자 노는 게 습관이 됐어요. 자라서도 항상 사람들이 따돌렸어요. 시집와서도 빨갱이 딸이라는 말이 몸에 절어서 남들과는 어울림이 없었어요. 늘 혼자다 보니 지금도 친구가 없어요. …… 열여덟 살에 자살을 시도했고, 스물세 살에도 자살을 시도했어요. 스물세 살 때는 (남편의 가정 폭력과 무책임함을 견딜 수 없어 어린 아들이 잠 잘 때) 밤중에 강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떠내려가서 모래톱에 걸려서 살았어요. 허겁지겁 돌아와 보니 어린것은 여전히 세상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죽으면 애 신세는 나보다 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무모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주○○ 구술, 2021.5.19.).

구술자 정○○는 젊을 때 경찰에게 머리를 구타당하는 등 폭행을 자주 당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심리적 충격이 컸기에 50세의 나이에 스트레스성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구술자는 당시 반신 마비가 왔으나 끈질기게 재활 치료를 해 재기했다. 그러나 지금도 뇌경색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으며, 불면증, 부분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손과 다리가 마비됐어요. 재활하고 난 다음에도 오른쪽 발가락은 말초신경까지 피가 안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자주 넘어지지요. 마음고생은 말도 못 하죠. 나이가 팔십인데도 잠자리에 누우면 아직도 악마 같은 (가해자의) 얼굴이 떠올라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요. 그때마다 이를 갈면서 ‘내가 견딘다, 내가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불면증 때문에 50년 전부터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 못 끊고 있죠. 그리고 저는 머리를 많이 상했기 때문에 기억 상실 증세가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치매는 아니지만, 다쳐서 죽은 세포는 회복이 안 된 대요. 그러니까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추억을 소환하면 아픈 상처, 눈물부터 나오니

까 그게 싫어서 애써 일에 몰두한다든지, 다른 생각 한다든지,
그렇게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지요(정○○ 구술, 2021.4.19.).

이들 외에도 필자가 만난 1세대 구술자 중 자녀가 전시에 학살당하거나 전후 국가폭력 때문에 일찍 사망한 구술자들은 트라우마가 큰 편이었다. 그리고 2세대 구술자들은 유년기에 가족 해체 등 근거지 박탈의 고통을 겪었고, 이것은 빈곤과 교육 기회 부재 등 생존 자원의 결핍으로 연결되어 성장기에 트라우마를 쉽게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평생 분노조절 장애, 대인관계 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고생했다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국가로부터 2등 국민의 대접을 받으며 연좌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 국가폭력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근거지가 뿌리째 없다는 박탈감과 함께, 가족 상실의 아픔이나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을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안고 있었다.

특히,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아직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두려워 자신이 겪은 피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회적 치유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어떤 구술자는 수십 년 전에 겪었던 사건의 가해자 이름을 말할 때, 순간적으로 안색이 흠뻑으로 변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들을까 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떤 구술자는 아직도 해마다 특정 시기에는 트라우마로 인한 발진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이러한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침묵의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다.

이처럼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는 ① 사회문화적 트라우마, ② 생애사 전반에 걸친 복합적 트라우마, ③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트라우마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애, 정신질환, 불면증, 우울증, 기타 중증 질환의 피해를 겪었으며, 가족 구성원 중에 자살자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III. 과거청산 활동이 구술자에게 미친 영향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는 전형적인 사회적 트라우마이자 개인 관계적 트라우마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트라우마는 정세의 변화와 사건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피해자 모임이나 과거청산 운동 참여 여부가 치유에 큰 영향을 준다. 이처럼 사회적 트라우마는 다른 트라우마와 달리 사회적 치유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사회적 치유에 유족회 운동과 국가기관의 과거청산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1. 국가기관의 진상규명과 유족회 운동의 영향

이 조사에 참여한 구술자 중 4명은 자신이 유족회 운동을 했거나 아들의 유족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제주지역 구술자 문○○은 아들이 유족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제주4·3위원회에도 진상규명을 신청해 남편이 희생자로 결정됐다. 구술자는 2023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2021)이 통과됨에 따라 남은 가족들은 위원회의 보상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남부지역 구술자 박○○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과정에 어머니와 오빠 내외를 희생자로 확인해 2010년에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그 뒤 구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승소했으며 소송 과정에 뒤늦게 유족회에 합류했다. 구술자 정○○과 주○○은 유족회 운동을 앞장서서 했다. 정○○은 2010년에 발간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보고서에 아버지가 희생자로 거명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승소했다. 구술자 주○○도 2010년에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아버지가 학살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후 구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재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구술자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남편이나 아버지 대

신 국가와 사회로부터 처벌받고 배제되어 왔기에, 남편이나 아버지의 명예 회복은 곧 자신의 명예 회복을 의미한다고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므로 과거사정리기관의 진실규명과 소송을 통한 배·보상은 구술자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성과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의 배·보상 과정은 일부 구술자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일례로 구술자 박○○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승소했으나,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과정에 차별받았다고 했다. 구술자 주○○는 민사 배상과 형사 배상 지급 과정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유족회 운동은 구술자들의 삶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술자들은 처음에는 자기 가족의 명예 회복이라는 개인적 동기에서 유족회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일부 구술자들은 운동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유가족과 의사소통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성을 경험했으며,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험의 폭도 넓혀 나가면서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국가폭력 사건을 재해석하게 됐다. 일부 구술자들은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 피해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됐고, 이것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것은 구술자가 자기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처음 유족회를 시작할 때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것만 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죠. 이젠 ‘공부하는 자세를 지니자.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잘못된 역사 앞에 나 하나라도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고 아버지들의 죽음이 역사 교과서에 바르게 수록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활동할 생각입니다(정○○ 구술, 2021.4.19.).

물론 지금도 유족회에 참가하는 유가족 중에는 개인적인 피해 복원과 배·보상만을 활동 목표로 여기는 사람이 다수이다. 그럼에도,

국가폭력에 관해 해석하는 방식은 유족회에 참가하지 않는 유가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술자 최○○는 다른 구술자와 달리 유족회를 전혀 접해 본 적 없었다. 구술자의 가족도 연좌제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했다. 구술자 최○○는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 피해를 해석하는 방식도 유족회 운동을 했던 구술자와 달랐다. 이 구술자는 전쟁을 비극, 운명으로 여겼으며, 전시에 일가 수십 명이 학살되고 젓먹이 자녀까지 잃은 것을 국가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가해자였던 마을 주민들을 “착한 사람”들이며, “착한 사람”인 그들이 자신의 일가를 학살한 것은 자신과 집안 식구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구술자는 학살 사건은 “자기 집안 식구의 탓”에 일어났으므로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가해자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술자: 남 부끄럽지유.

면담자: 왜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아이, 남들은 다 괜찮은데 시동생 두엇들이 서울 대학 댕겨갖고 그 지랄해서 식구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면담자: 대학 다닌 게 무슨 잘못인가요?

구술자: 뭔지 몰라도 공산대학 댕긴다고 해서 식구들이 다 망했잖어.

면담자: 시동생이 잘못 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신 거네요.

구술자: 그렇쥬.

면담자: 그 동네 사람들이 원망스럽거나 가족이 억울하게 죽은 게 원통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구술자: 원망 안 해요. 원통하다고도 생각 안 했시유. 동네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 집 식구만 죄 있게 갔을 테지. 그 사람네 원망할 게 뭐 있시유.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시유. 그라고 그냥 살은 거지

(최○○ 구술, 2021.4.18.).

구술자는 재혼한 뒤 학살된 원가족이 살던 마을을 떠나 인근 마을로 이주함으로써, 연좌제 국가폭력이나 지역사회의 배제는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장날이면 가해자가 있던 마을의 주민들을 마주쳐야 할 정도로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70여 년 동안 살면서 학살 사건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작동해 온 한국 사회에서 부역 혐의 학살 사건 피해자들은 자신이 ‘양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일례로 1960년 4·19 이후 제4대 국회에서 접수했던 ‘양민피살자신고서’에도 부역 혐의 학살 사건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는 드물었다(김상숙, 2014: 360). 그러므로 구술자가 국가폭력을 이렇게 해석한 것은 과거청산 담론을 전혀 접하지 못한 부역 혐의 학살 사건 유가족으로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견디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 민간인 학살 사건 유가족 중에는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의 성격과 원인을 이 구술자 처럼 해석하면서, 국가기관에 진상규명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젠더폭력 과거청산에 관한 구술자들의 인식

구술자들의 증언을 보면,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은 가족 단위로 가해진 연좌제와 가부장제의 성 불평등 현상과 결합해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구술자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남편이나 아버지 대신 국가와 사회로부터 처벌을 받는 상태에서 생활했으므로, 가부장제적 국가에 맞서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생애사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했다. 그러므로 구술자들은 구술하는 과정에 국가폭력 피해와 가부장제로 인한 피해를 구분하기 힘들어했다.

구술자들이 젠더폭력 및 가부장제를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했다.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폭력이 젠더폭력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나 사회

에 의한 젠더폭력의 심각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보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구술자도 있었다. 반면, 심각한 젠더폭력 피해를 증언한 일부 구술자는 자신의 증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술자들이 이러한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성평등 운동이 노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편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젠더폭력 과거청산 문제가 아직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되지 않았고, 그 해결 대안이 뚜렷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했을 때 겪을 수도 있는 2차 피해를 염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수의 구술자는 젠더적 측면에서도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표명하기도 했다.

저는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사상과 이념의 일로 총 한 방에 가셨지만, 엄마는 꽃 같은 나이에 빨갱이 아낙이라는 주홍 글씨를 이마에 달고 평생을 다 뺏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디서도 국가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곳이 없었고 치료해 주는 곳도 없었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미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 생각조차 들더라고요. 연좌제로 국가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군인 경찰이 막무가내로 초토화하고 폐쇄화시키고 인간으로서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혼자 새기고 오롯이 감내하는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한국전쟁 유가족의 딸들이 모여서 가슴의 응어리를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좀 더 관심을 보여줬으면 합니다(정○○ 구술, 2021.4.19.).

요컨대 구술자들은 대부분 1990년대까지는 가족에 대한 희생과 해체된 가족의 복원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국가폭력 피해를 극복하려고 했다. 2000년대에 국가기관의 과거청산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도 남편이나 아버지의 복원은 곧 자신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 구술자는 이 과정에 여성 피해 당사

자로서 겪은 국가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젠더적 측면에서 실천 의지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IV. 결론 : 국가의 젠더폭력 과거청산 가능성

이 글에서는 여성 구술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전시·전후 피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술자들에게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학살된 것이 전시와 전후에 국가폭력 피해를 겪게 된 출발점이 됐다. 구술자 중 일부는 전시에는 군경 토벌대에 의한 임신부 폭력, 수용소 출산, 일가족 학살과 학살 현장 생존 등의 피해를 겪었다. 전후에도 일부 구술자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사찰 관리, 구타와 성폭행 등 연좌제 국가폭력을 겪었다. 요시찰 대상이 된 여성이 국가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했던 경우도 있다. 고문과 복합된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전쟁 직후부터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1980년대 초반까지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반공 사회의 배제와 가부장제의 성차별적 구조에 의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젠더폭력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 가족 구성원의 부상과 장애, 정신질환, 병사, 자살, 가족 해체 등 가족 단위의 피해가 있었고, 일부 구술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심리적·신체적 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술자들은 여성 가장으로서 고된 노동을 하며 생계와 육아를 감당하고 해체된 가족의 복원을 위해 헌신하며 삶을 유지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기관의 과거청산 활동이 진행되고 유족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일부 구술자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복원은 곧 자신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 과거의 국가폭력 사건을 재해석하고 젠더적 측면에서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발전시킨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아닌 피해 당사자로서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배·보상, 또는 생활 지원과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민간인 학살 생존자·유가족에 대한 전·전후의 성폭력뿐 아니라, 한국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 성폭력, 강제 격리·수용·이주·노역 사건(서산개척단, 한센인 등) 관련 및 국가관리 시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에서의 성폭력,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관련 성폭력, 공안사건 성폭력 등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이 있었다. 현재 이를 진상규명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화해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을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분야에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별도로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요원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남아공 TRC, 1998). 이후 여러 나라의 과거청산 과정에 성주류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시에라리온의 경우 시에라리온 진실화해위원회와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라는 두 가지 틀로 젠더폭력 과거청산을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했다(시에라리온 TRC, 2004).⁶⁾ 1990년대에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됐고, 2000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가기구의 젠더폭력 과거청산은 5·18위원회 이외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청산 활동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젠더폭력 과거청산을 사회적 의제로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는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진실화해법 일부 개정안(윤미향 의원 등 11인,

6)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와 시에라리온 진실화해위원회의 젠더폭력 과거청산 활동에 관해서는 김상숙의 논문(2021b, 43-53; 2024: 6-8) 참조.

2022.4.28.)」이 발의됐으나, 현재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젠더폭력 과거청산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진실화해법 등 과거사법에 과거사 젠더폭력을 진실규명 과제로 명시하고 후속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진실화해법 일부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 안에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과거사 젠더폭력 직권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생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없이 증언할 환경을 조성하고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성폭력 외에도 가부장제와 결합한 과거사 젠더폭력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를 위해 연구자와 시민사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여성단체와 과거사 인권 단체가 연대하여 (가칭) ‘과거사 젠더 정의 실천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은 가해의 책임이 국가에 있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성 평등적 과거청산을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해방 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은 피해생존자 상당수가 고령이므로, 더 늦기 전에 그들의 피해 구제와 사회적 치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2024. 05. 16, 논문심사일: 2024. 06. 06, 게재확정일: 2024. 06. 12)

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상숙의 논문(2021b: 63-72) 참조.

참고문헌

1. 문헌 자료

- 김귀옥. 2012a. “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 『구술사 연구』 Vol.3 No.2.
- _____. 2012b. “한국전쟁과 한국군 위안부.” 『군대와 성폭력』. 서울: 선인.
- _____. 2014. “일본 식민주의가 한국전쟁기 한국군 위안부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 『사회와 역사』 제103집.
- _____. 2019.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서울: 선인.
- 김문두. 2011. “4·3후유장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4·3트라우마 그 치유의 모색』. 제주4·3 63주년 기념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4·3평화재단.
- 김상숙. 2014. “과거청산을 위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사회와 역사』 제104집.
- _____. 2016. “대구 10월항쟁유족회와 과거청산 운동”. 『NGO연구』. 제11권 제1호.
- _____. 2021a.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 1기 진실화해위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31집.
- _____. 2021b. “젠더폭력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남아공 TRC의 시도를 통해 본 한국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NGO연구』 16권 2호.
- _____. 2022. “연좌제와 ‘대살(代殺)’을 중심으로 본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여성문학연구』 제57호.
- _____. 2024. “젠더폭력과 과거청산: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TRC) 활동 사례를 통해 본 이행기 정의와 젠더 정의의 통합 시도”. 전남대 5.18 연구소 월례집담회 원고.
- 김성례. 1998.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창작과 비평』 Vol.26 No.4.
- _____. 2001. “국가폭력과 성정치학-제주 4.3을 중심으로.” 『흔적』 제2호.
- 김종균. 2013. “한국전쟁 체험담 구술에서 찾는 분단 트라우마 극복 방안.” 문학치료연구 제27집.

- 김학재. 201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연구』 제14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내무부. 1980. 『신원기록일체정비계획』.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 박현숙. 2014. “여성 전쟁체험담의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과 대응방식.” 통일인문학 제57집.
- 오금숙. 1999.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엮음.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서울: 역사비평사.
-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서울: 역사비평사.
- 이영문. 2013. “여순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에 대한 소고(小考).” 『지역사회연구』 3.
- 이성숙. 2007.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과 역사 7.
- 이임하. 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한국전쟁과 젠더』. 서울: 서해문집.
- _____. 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서울: 책과함께.
- 전남대학교 심리건강연구소. 2007.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센터. 2016. 『2016년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심리지원사업보고서』.
- 진실화해위원회. 2008.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 _____. 2023a. “월북자 가족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권.
- _____. 2023b. “불법사찰·연좌제 피해 사건.” 『2023년 하반기 조사 보고서』 13권.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outh Africa. 1998.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 Cape Town, South Africa: Juta Press.
- Truth & Reconciliation Commission, Sierra Leone. 2004.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ision Report Vol. 3B*. <https://www.sierraleonetr.org/> (2024.3.31. 접속).

2. 구술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김상숙 면담. 2021. 『2021년도 구술자료 수집사업 : 분단체제, 여성 국가폭력 생존자의 생애와 트라우마』. 일부 구술자의 녹취록.
 국사편찬위원회. 최태육 면담. 2010. 『2010년도 구술자료 수집사업 : 한국전쟁 이후 희생자 유가족의 전후 생활과 활동』. 일부 구술자의 녹취록.

<표> 구술자의 주요 이력과 구술 요지(본문 인용 순)

연번	성명	출생 년도	사건 지역	관련 사건과 주요 피해	기존 기관 구술 여부	면담 일자	면담자
1	문○○	1930	제주	제주4·3 유족이자 현장 생존자. 임신부로서 군경에게 고문당하고 수용소에서 아들 출산.	국사편찬위원회(2021)	2021. 4.25.	김상숙
2	최○○	1923	중부	1950년 10월 남편과 아들 둘(2살, 4살)을 포함해 일가 수십 명 몰살.	국사편찬위원회(2021)	2021. 4.18.	김상숙
3	박○○	1936	남부	1951년 3월 군경 토벌대에 의해 어머니와 오빠 내외가 학살됨. 본인은 학살 현장에 혼자 생존함.	-	2021. 6.16.	김상숙
4	강○○	당시 20대	중부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 성고문 피해자. 경찰과 우익 청년단원에게 성고문 피해당함. 구금 장소에서 아들 사망.	-	2014. 9.3.	최태육
5	신○○	1936	중부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 13살에 경찰이 총을 겨누며 취조하는 피해당함. 5살 유아인 조카딸도 경찰에게 취조당함.	국사편찬위원회(2010)	2010. 3.31.	최태육
6	정○○	1946	남부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 연좌제 피해자. 전후에 요시찰로 분류돼 경찰에게 사찰 관리, 구타, 성추행 등의 피해당함.	국사편찬위원회(2021)	2021. 4.19.	김상숙
7	김○○	1933	중부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 연좌제 피해자. 남성이며 요시찰로 분류돼 본인은 경찰에게 고문 피해를, 아내는 2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당함.	-	2010. 4.10.	최태육
8	한○○	1944	남부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 연좌제 피해자. 요시찰로 분류돼 20년 가까이 경찰에게 성폭력 피해당함. 어머니도 성폭력 피해당함.	-	2018. 10.19	김상숙
9	주○○	1949	중부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 연좌제 피해자. 친척과 지역 주민의 폭력과 집단 따돌림 피해당함. 강제 결혼, 가정폭력 피해당함.	국사편찬위원회(2021)	2021. 5.19.	김상숙
10	여○○	1931	중부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 강제 결혼 피해자. 우익 청년단 간부에게 강제 결혼 당한 후에 생활함.	국사편찬위원회(2010)	2010. 3.31.	최태육

<Abstract>

**Transitional Justice and Healing for Victims of the State
Violence Against Women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of Civilian Massacres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Kim, SangSook*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victimization of the state violence against women among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of civilian massacres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victim-survivors' testimony. And searched for the possibility of past purging and healing for victim-survivors. Some of the victim-survivors suffered damage such as torture of pregnant women, childbirth of camps, massacre of family members, survival of massacre sites, and sexual torture by the military and police.

Even after the war, some victim-survivors had suffered from the state violence, such as police inspections, beatings and sexual violence for decades because they were "Red family members". gender discrimination of patriarchy, or suffered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the 2000s, state agencies such as the Jeju 4·3 Committee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Republic of Korea) conducted activities to purge the past. However, it is not the case the truth-finding about the suffering that women as victims, not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reparation or compensation have been carried out properly. In order to purge the past of Gender-based

* Sungkonghoe University

Violence by the State in Korean society, first, it should be specified as a task of truth-finding in past settlement laws such as the Act on Settling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n exclusive investigation team within a state agency such a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victim-survivors can testify. Third, for this, solidarity between women's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s needed.

Keywords: Korean War, Female Victim-Survivor, 'Red family', Gender-based Violence by the Stat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Republic of Korea : TRCK), Past Purgings(Transitional Justice)